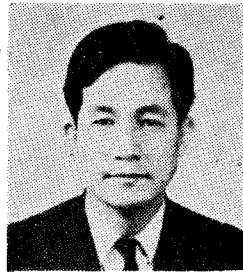


에이레의 特許制度



朴英緒
<辨理士>

① 出願

1. 特許出願人の資格

出願에 관계되는 發明의 真正한 그리고 最初의 創作者이거나 이들로부터 출원할 權利를 讓受한 者이면 누구던지 自己單獨 또는 他人과 共同으로 特許를 출원할 수가 있다.

또한 발명의 保護를 위해 條約國에 출원한 자 또는 출원을 양수한 자도 이에 該當된다.

條約出願은 當該 保護出願日 또는 그 이상의 출원이 있었던 경우에는 최초의 출원일로부터 開始한 所定의期間(12個月)을 超過하지 말 것 内에 하여야 한다.

2. 特許出願

특허출원은 所定의 樣式으로 作成하거나 소정의 方式에 따라 特許廳에 提出하여야 한다.

그러나 출원할 權利를 讓渡받은 출원은 그 출원과 함께 또는 그 출원후 소정의 기간내에 최초의 發明者임을 主張한 者의 署名이 있는 申請者를 제출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또한 특히 출원서에는 完全明細書나 假明細書를 添付해야 하고 조약출원에 있어서는 各出願書마다 완전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출원서에 가명세서를 첨부했을 때에는 출원일로부터 1年以內에 완전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려하지 못하면 그 출원은 抛棄한 것으로 看做하게 된다.

特許廳長에 대하여 別途의 請求가 있고 완전명세서 제출이전에 소정의 料金을 納入했을 때는 출원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가 있다.

3. 明細書의 内容

명세서에는 완전명세서나 가명세서를 不問하고 발명의 内容을 記載하며 그 冒頭에 발명의 主題名稱을 揭記해야 한다.

商工部長官이 制定한 規則에 따라 명세서에는 圖面을 첨부하며 特許廳長의 命令이 있을 때도 첨부해야 한다.

명세서에는 특히 발명 및 그 발명을 實施하는 方法을 記載하며 발명의 보호를 要求할 수 있고 발명의範圍를 지우는 1 또는 2 이상의 請求範圍를 末尾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審査

特許出願에 관한 완전명세서의 제출이 있었을 때는 원서 및 명세서에 소정의 事項이 기재되어 있는지의 與否, 권리범위에 청구한 발명이 國外(外國特許廳等)에서 이미 公開되었는지의 여부를 특히 청장은 審査官에게 심사하게 한다.

이에 따라 심사관으로부터 特許法이나 關係規則의 要件에 適合하지 않거나 特허권의 賦與에 异議事由를 發見하여 이를 特허청장에 報告하면 特허청장은 출원 절차의 繼行을 拒絕하거나 명세서의 補正을 요구하게 된다.

출원후 완전명세서와 認容되기까지 출원인의 청구로서 소정의 요금을 납입하면 그때로부터 6개월이 經過되지 않는 날까지 심사를 留保시킬 수 있다(이 경우 조약출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출원서 또는 명세서의 日字는 완전명세서의 認容前에 보정되면 그날로부터, 그리고 當該書面이 출원인에 還送되었으면 再提出한 날로 본다.

심사관은 출원된 완전명세서의 請求範圍內容이 國內에서 특히 출원된 것 중에서 이미 公開되었는지를 確認調査하거나 별도의 特허청장의 명령에 따라 國내의 關係文書에서 공개되었는지의 여부도 아울러 확인 조사한다.

특허청장은 심사관의 調査結果로 출원인의 보정이나 證據方法에 대해 納得할 수 없다는 確證이 있으면 當該

完全明細書의 인용을 거절하게 된다. 이러한 특허청장의 결정에不服할 때는法院에 抗告할 수가 있다.

완전명세서가 인용되면 특허청장은 출원인에게 그要旨를通知하고 그 요지와 出願日字 및 당해출원에 관계되는 명세서 등을 公衆에게 關覽시킨다는 내용을 公報(官報)에 告示한다(이 날이 완전명세서의 公告日이 된다).

③ 異議申請

완전명세서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利害關係人은 특허청장에게 다음의 이유로써 特許權 賦與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가 있다.

① 특허출원인(또는 최초의 발명자로 계기한 자)가 冒認出願號을 때

② 명세서 또는 청구범위가 国내에서 이미 公知된 技術內容을 기재했을 때

③ 완전명세서에 발명 또는 이것을 실시하는 방법이 充分適正하게 기재되지 못했을 때

이와같은 이의신청이 있었을 때 특허청장은 출원인에게 그 이의를 통지하고 출원인 및 이의신청인에게當該事件을決定處理하기에 앞서 應答할 수 있는機會를 주고 특허권의 부여 또는 거절의 결정을 職權으로 내리게 된다. 이때에도 불복하면 항고할 수가 있다.

④ 特許權의 存續期間 및 延長

완전명세서를 제출한 날을 特許證의 일자로 하고 特허권의 存續期間은 法律로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이 날로부터 16年間으로 한다.

특허권은 소정의 기간 또는 그 延長期間內에 更新料를 납입하지 않으면 기간연장이 될 수 없고 이에 대해 특허청장에게 별도의 청구를 내면 6개월까지 연장 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追加料金까지 포함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기간연장방법은 특허권자가 특허권의 연장을 법원에 申請公告한 후 滿了 6個月前에 특허청장에게 기간연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은 특허권자가自己의 特許發明이 적정한 報酬를 받지 못한 것이 認定되면 特허권의 존속기간을 5년이하까지 연장해 주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10년까지 연장하고 있다.

⑤ 特許權의 取消

출원시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 利害關係人이 特許證

發給後 1年 以內에 特허권의取消를 特허청장에게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때 特許權侵害訴訟, 特許權取訴訟이 법원에 繫留中일 때는 법원의 許可를 받아서 청구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은 特허권자에게請求要旨를 適시하고 事案을 결정하기에 앞서兩側에 應答할 기회를 주게되어 청구이유가妥當하다고 납득하면 特허권자에게 無條件 또는 명령으로서指定期間內에 완전명세서를 자기가 납득할 수 있도록 補正指示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當該特許權을 취소한다.

이때에도 特허청장의 결정에 불복하면 법원에 항고할 수가 있다.

⑥ 特許權의 強制實施許與

특허 출원일로부터 4년, 特許證發給으로부터 3년 후 이해관계인은 特허권의 獨占의 權利濫用을 이유로 당해 特허권의 실시 또는 "License of Right"란 文句를 特허증에 表記하도록 特허청장에게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해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는 優先으로서는

① 국내에서 業으로 실시할 수 있는데 이를 活用하지 않을 때

② 국내에서 特許物의 需要가 適當한 조건하에서 많을 때

③ 特허권자가 적당한 조건아래서도 실시권의 許與를 거절함으로써 輸出 또는 國內生產活動에 不當한 害를 미칠 때 등이다.

특허청장은 이와같은 이유가 確認得되며 적절한 조건으로 실시권 청구를 받아들여 實施權의 허여를 명령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실시권의 허여를 명령한 날로부터 2년후에 이해관계인의 特許權取消請求가 있어 특허청장이 이를 납득하면 特허권의 취소를 명령할 수 있다.

⑦ 抗告

특허청장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법원에 訴하여야 하며 抗告事件은 법원의 判事 1名이 審理한다.

공중의 열람에 공개하지 않은 特許明細書에 관한 항고사건은 非公開로 심리하고 特허청장은 자기의 결정이 정당함을陳述하기 위해 本人 또는 代理人을 법원에 出頭시킨다.

抗告請求는 特허청장이 명령한 날로부터 1개월내 또는 再請求期間期(3개월)內에 해야하며 特別한 法律問題는 最高法院에서 다루게 된다. ♣